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310 |
|----------|-----|

2019년 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한기영 의원 외 11명
- 나. 제안일 : 2018년 12월 31일
- 다. 회부일 : 2019년 1월 7일
- 라. 상정일 :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2월 26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기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국가직과 지방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이 상이함.
-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임용기간 운영의 경우에도 국가직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을 총 임용기간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을 총임용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 단절에 따른 불안정한 행정 집행 초래는 물론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공무원간 고용 차별이 존재하여 평등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할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달리 지정규모를 10%로 제한하고 있고,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근무기간 총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총5년의 근무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에 차별을 겪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용된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이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직간 상이한 바,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직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연속성으로 인한 행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가직 개방형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무원의 임용 차별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의 지정범위를 정하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신분 임용기간 및 충원방법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직위지정 범위와 임용기간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는 지정범위가 총수(특별시 및 광역시·도 : 1급부터 5급까지, 시·군 및 자치구 : 2급부터 5급까지)의 100분의 10범위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 임용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한정 하고 있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2).

- 1)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이에 반해, 국가직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직위를 지정(「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하고 있음.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 지정범위 비교〉

| 구분 | 국가직 개방형 직위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 |
|--------------|---|-------------------------------------|-------------------------------------|
| |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시·군 및 자치구 |
| 개방형 직위 지정 범위 |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규정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규정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규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 <u>1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 총수의 100분의 10범위</u> | <u>2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 총수의 100분의 10범위</u> |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비교〉

| 구분 | 일반임기제 공무원 | | 국가직 개방형 직위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
|-------------|-------------------|------------------|---------------------------|----------------------------|
| | 국가직 | 지방직 | | |
| 개방형직위 임용 기간 | 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규정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규정 |
| | <u>10년 (5+5년)</u> | <u>10년 (5+5)</u> | <u>(5년+일정기간 동안 연장 가능)</u> | <u>5년으로 제한</u> |

※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임용기간 차별 시정을 건의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안」 이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음.

-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정의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채용목적, 종사업무와 전문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 연장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임.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 지정과 임용기간 규정〉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가직)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
|--|---|
| <p>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u>고위공무원단 직위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소속 장관은 <u>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p> | <p>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u>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p> |
| <p>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② 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u>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u></p> | <p>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

- 이러한 차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고용불안과 업무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형식적인 채용절차로 행정력의 낭비우려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등 우수 인재 확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차별 사례 및 시정조치 내역〉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진정 결과 2건
 - 대우공무원 선발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 개정 권고(2014.9.19.)
 - ☞ 특정직 공무원 재직경력 인정 차별 : 국가직 모두 인정, 지방직 3년이상 근무기간만 인정한 사례
 - 지방자치단체 방호직렬 공무원 채용시 차별 해소 권고(2016,10,31)

- 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직과 지방직간 근무기간 및 채용시험 등의 방법에 차별적 규정이 존재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이미 개정(2018.10.2. 시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일반임기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정방침 제245호, '18.10.2.)이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 및 임용기간을 차별없이 일관성 있게 규정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본 개정건의안은 고용평등과 인권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과 관련하여,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정규모가 상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1급부터 5급까지, 시군 및 자치구 : 2급부터 5급까지)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범위 조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에 있어 4급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의결주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함.

나. 주요내용

- 의결 주문 중 “10%로 제한하고 있고”를 “정하고 있고”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 련 310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의결주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의결 주문 중 “10%로 제한하고 있고”를 “정하고 있고”로 수정함.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결 주문 중 “10%로 제한하고 있고”를 “정하고 있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전 의 안 | 수 정 안 |
|---|---|
| <p>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행정 수요에 따라 복잡화·다양화·전문화 추세에 있으며, 각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바이오, ICT 등 지역에 맞는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p> | <p>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행정 수요에 따라 복잡화·다양화·전문화 추세에 있으며, 각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바이오, ICT 등 지역에 맞는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p> |
| <p>이에 전문적 행정 업무를 수행할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을 채용하여 각종 현안과 주민관심분야에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p> | <p>이에 전문적 행정 업무를 수행할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을 채용하여 각종 현안과 주민관심분야에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p> |
| <p>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p> | <p>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p> |
| <p>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p> | <p>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p> |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달리 지정 규모를 10%로 제한하고 있고,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근무기간 총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총5년의 근무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에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인재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직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의 차별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의 위배인 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을 통해 행정의 안정적인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직과 지방자치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달리 지정 규모를 정하고 있고,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근무기간 총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총5년의 근무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에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인재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직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의 차별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의 위배인 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을 통해 행정의 안정적인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직과 지방자치

단체직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단체직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행정 수요에 따라 복잡화·다양화·전문화 추세에 있으며, 각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바이오, ICT 등 지역에 맞는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에 전문적 행정 업무를 수행할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을 채용하여 각종 현안과 주민관심분야에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달리 지정규모를 정하고 있고,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근무기간 총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총5년의 근무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에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인재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직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의 차별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의 위배인 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을 통해 행정의 안정적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직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19. 3.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